

[별지 제65호서식] <개정 2007.6.7>

※제 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청서 ※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			
소 유 자	성명(명칭)		주민(사업자)등록번호
	주 소	(전화번호 :)	
이 륜 자 동 차 번 호			배기량 또는 정격출력
변경사항	변 경 전		
	변 경 후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
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
※구비서류 1.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(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) 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이륜자동차번호판(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)			

※신고안내

신고하는 곳	읍·면·동	처 리 기 간	즉 시
수 수 료	없음		
○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2항). ·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(명칭)변경시 : 15일이내 ·매매 : 15일이내, 증여 : 20일이내, 상속 : 3일이내 -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2항제2호).			

33331-06311민

210mm×297mm

96.10.4 승인

(일반용지 60g/m²)